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16-74호

『인천광역시 종합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11월 15일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

인천광역시 종합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가.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은 1994년 4월 8일 개관이후 몇 차례에 걸쳐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여 신규시설을 도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약 22년 동안 사용료에 대한 인상을 한 차례도 하지 않아 현실성 있게 조정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음.
- 나. 따라서 회관 시설대관의 불합리한 사용기준을 정비하고 유사 시설에 비해 현저히 낮은 사용료를 현실화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회관의 사용시간을 오전 8시에서 오전 9시로 조정함.(안 제8조)
- 나. 대관심의위원회의 목적과 위원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함.(안 제11조)
- 다. 사용료의 특례 및 감면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16조)
- 라. 문화예술 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유·무료 회원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유료회원에게 소정의 회비를 징수할 수 있도록 신설함.(안 제16조의2)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25일(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우편, 팩스 또는 이메일로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참조 : 시의회 문화복지전문위원실, 전화032-440-6224, 팩스 032-440-8764, 이메일 —mpfive705@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 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주 소:			
○성 명:			
○연락처: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4. 참고자료

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인천광역시 종합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종합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추석”을 “추석날”로 한다.

제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1호 중 “08:00~12:00”을 “09:00~12:00”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회관시설의 1회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다만, 전시실의 사용시간은 09:00부터 22:00까지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한다)의 산정기준은 별표1과 같으며 사용료는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 징수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여”를 “시민이 사용”으로, “범위는 다음과”를 “시설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부속시설 : 조명시설, 무대시설, 음향시설 등 공연·전시·기타 행사에 필요한 일체의 부속설비와 냉·난방시설 등

제10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1조제1항 중 “업무의 공정성을 기하기”를 “사용허가 여부를 조정·

심의·자문하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제11조제4항 중 “회관 기획운영과장 및 예술지원과장”을 “각 부서의 부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연임”을 “1회에 한하여 연임”으로 한다.

제14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상업적 공연물 및 위원회에서 흥행성 있는 관람물로 결정한 공연에 대해서는 별표 1-1과 같이 사용료를 징수한다.
- ② 국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주최하는 행사 또는 공연 등에 대해서는 모든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인천문화재단에서 주최하는 행사 또는 공연에 대해서는 기본사용료의 전액만 감면할 수 있다.
- ③ 비영리 목적으로 하는 문화예술단체의 공연·전시 중 국가 또는 시에서 재정 지원을 하고 문화예술단체가 기획하여 주관할 경우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시가 단순히 후원명칭으로 지원할 시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제16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2 (회원제 운영) ① 관장은 문화예술 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회관의 자체 기획공연, 시립예술단공연 및 전시에 대하여 무료·유료 회원제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관장은 유료회원에게 소정의 회비를 징수할 수 있으며, 회관의 자체 기획공연, 시립예술단공연 및 전시에 대하여 별표1-2와 같이 운영할 수 있다.

별표 1과 별표 1-1, 1-2, 별표 2,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합문화예술회관 사용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 중이거나 사용 예정인 시설의 사용료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 (개관 및 휴관) 회관은 다음과 같은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다만,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인천광역시종합문화예술회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조정할 수 있다. 1. 1월 1일, 설날, <u>추석</u> 2. · 3. (생략)	제4조 (개관 및 휴관) ----- ----- -----. ----- -----.
제8조 (사용시간) <u>회관의 사용시간 구분은 다음과 같으며, 다만, 전시장의 사용 시간은 09:00부터 22:00까지로 한다.</u> 1. 오전 : <u>08:00~12:00</u> 2. · 3. (생략) <u><신 설></u>	제8조 (사용시간) ① <u>회관시설의 1회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다만, 전시실의 사용시간은 09:00부터 22:00까지로 한다.</u> 1. ----- <u>09:00~12:00</u> 2. · 3. (현행과 같음) <u>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한다)의 산정기준은 별표1과 같으며 사용료는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 징수한다.</u>
제10조 (대관의 범위) ① 회관의 시설 및 설비 중 <u>대여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u>	제10조 (대관의 범위) ① ----- ----- <u>시민이 사용</u> -- <u>시설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u> --.

1. (생 략) 2. <u>부속설비 : 피아노, 동시통역 시설, 조명시설, 무대시설, 음향시설, 영사기 , 기타행사 · 집회에 필요한 일체의 부속기기 및 냉난방 시설</u> ② <u>관장은 제1항의 시설물 등을 회관 자체의 공연 · 전시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대관할 수 있다.</u> 제11조 (대관심의위원회) ① 정기 대관 업무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종합문화예술회관대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생 략)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관장이 되고 간사는 대관업무담당이 된다. <u><후단 신설></u> ④ <u>위원중 당연직 위원은 회관 기획운영과장 및 예술지원과장</u>	1. (현행과 같음) 2. <u>부속시설 : 조명시설, 무대시설, 음향시설 등 공연 · 전시 · 기타 행사에 필요한 일체의 부속설비와 냉 · 난방시설 등</u> <u><삭 제></u> 제11조 (대관심의위원회) ① ---- --- <u>사용허가 여부를 조정 · 심의 · 자문하기</u> ----- -----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u>이 경우 위촉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u> ④ ----- <u>각</u> <u>부서의 부서장</u>-----
---	---

으로 하며, 기타 위촉직 위원은
문화예술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전문가중에서 관장
이 위촉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
로 하며, 연임할 수있다. 다만보
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⑥ ~ ⑨ (생략)

제14조 (허가취소 등) ① (생략)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된
때를 제외하고는 허가의 취소
등으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가
있을지라도 관장은 이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6조 (사용료의 특례 및 감면)

① 영화 및 흥행성이 있는 관람
물의 공연을 위한 사용료는 부
가가치세를 공제한 당해 관람수
입총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
는 금액을 징수한다. 이 경우에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회관이 정한 기일 내에 납부하
여야 하며, 나머지 금액은 관람
수입총액이 결정됨과 동시에 납

-----.

⑤ -----
----- 1회에 한하여 연임-----

-----.

⑥ ~ ⑨ (현행과 같음)

제14조 (허가취소 등) (현행 제1항
과 같음)

<삭제>

제16조 (사용료의 특례 및 감면)

① 상업적 공연물 및 위원회에
서 흥행성 있는 관람물로 결정
한 공연에 대해서는 별표 1-1과
같이 사용료를 징수한다.

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에 미달하는 때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징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흥행성 있는 관람물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대형뮤지컬 및 대중가수의 콘서트 등 상업적 공연

2. 기타 위원회에서 흥행성 관람물로 결정한 공연

③ 국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및 인천문화재단에서 주최하는 행사 또는 공연 등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④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1. 비영리목적으로 국가 또는

② 국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주최하는 행사 또는 공연 등에 대해서는 모든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인천문화재단에서 주최하는 행사 또는 공연에 대해서는 기본 사용료의 전액만 감면할 수 있다.

③ 비영리 목적으로 하는 문화예술단체의 공연·전시 중 국가 또는 시에서 재정 지원을 하고 문화예술단체가 기획하여 주관할 경우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시가 단순히 후원명칭으로 지원할 시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삭 제>

시에서 후원하는 문화예술단
체의 공연 및 전시

2. 비영리목적으로 시단위 이상
의 문화예술단체가 주관하는
공연

⑤ 외국인 또는 외국단체에서
주최하는 공연 및 전시행사중
시가 후원하는 행사의 사용료는
비영리 목적일 경우 전액을, 영
리목적일 경우에는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신 설>

<삭 제>

제16조2 (회원제 운영) ① 관장은
문화예술 인구의 저변확대를 위
하여 회관의 자체 기획공연, 시
립예술단공연 및 전시에 대하여
무료·유료 회원제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관장은 유료회원에게 소정의
회비를 징수할 수 있으며, 회관
의 자체 기획공연, 시립예술단
공연 및 전시에 대하여 별표1-2
와 같이 운영할 수 있다.

[별표]

종합문화예술회관 사용료

1. 기본시설사용료

(단위 : 원)

구분 시설명		기 준	사 용 료		비 고
			공연	행사	
공 연 장	대공연장	오 전	143,000	186,000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당해 기준사용료의 30%를 가산함. ○공연연습을 위한 공연장 및 무대 사용시에는 당해 기준 50%를 감면함. ○공연준비·철수 등을 위해 23:00 이후에 사용할 때에는 시간당 100,000원으로 한다. (30분 이상은 1시간으로 산정)
		오 후	180,000	234,000	
		야 간	270,000	350,000	
	소공연장	오 전	51,000	94,000	
		오 후	64,000	118,000	
		야 간	97,000	177,000	
	회의장	1회	105,000		○회의장은 오전·오후·야간으로 구분
전시장		m ²	180		○1일(09:00~22:00)m ² 당 사용료로서 분할하여 대관할 수 있음.
야외공연장		1회	50,000		

1-1. 상업적 공연물 사용료

(단위 : 원)

구분 시설명		장 르 별		1회 사용시간
		대중가수콘서트 등 상업적 공연물	홍행성 뮤지컬(어린이 뮤지컬 제외),오페라,연극, 영화촬영 등	
공 연 장	대공연 장	3,000,000	1,000,000	· 공연연습을 위한 공연장 및 무대 사용시에는 당해 기준 50%를 감면함. · 공연 1회당 · 공연 1시간 전부터 공연 종료 시 까지 · 냉·난방비 별도 징수함.
	소공연 장	1,500,000	500,000	

※ 주 : 1. 오전, 오후, 야간을 각 1회로 한다. 단, 1일은 09:00 ~22:00로 한다.

2. 부가가치세는 별도임

1-2. 회원제 운영

회원구분		연회비(원)	회원 혜택
무료회원		없음	· 이메일이나 휴대폰 문자를 통해 각종 공연정보 제공
유료회원	종합일반	30,000원	· 공연안내지 및 정기간행물 등 공연정보 제공 · 자체기획공연 및 시립예술단 공연 10~50% 할인 (공연별 2매 한도)
	종합가족	50,000원	· 공연안내지 및 정기간행물 등 공연정보 제공 · 자체기획공연 및 시립예술단 공연 10~50% 할인 (공연별 4매 한도)
	종합단체	200,000원/10인 (15,000원/ 1인 추가당)	· 공연안내지 및 정기간행물 등 공연정보 제공 · 자체기획공연 및 시립예술단 공연 10~50% 할인 (공연별 단체회원 개인별 2매 한도)
	시향일반	38,000원	· 종합일반회원의 모든 혜택 · 시향정기공연 무료 관람(회원본인에 한함)
	시향가족	76,000원	· 종합가족회원의 모든 혜택 · 시향정기공연 무료 관람 (회원본인과 추가1인에 한함)

2. 부속설비 사용료

(단위 : 원)

구분 시설명			기 준	사 용 료	비 고
피아노	그랜드대형 (외제)		대\1회사용	46,000	· 공연 준비 연습을 위하여 사용할 때에는 기준 사용료의 50%로 함. · 조율비 사용자 부담 · 지정 조율사만 가능
	그랜드대형 (국산)		대\1회사용	34,000	
	옐라이트		대\1회사용	11,000	· 대공연장에 한함
무대시설	오케스트라핏트		1회 공연	23,000	· 공연 준비·연습을 위하여 사용할 때에는 기준 사용료의 50%로 함. · 대공연장에 한함.
	회전무대		1회 공연	23,000	
	수평이동무대		1회 공연	23,000	
	승하강무대		1회 공연	23,000	
무대음향	마이크		1개 당	5,000	· 소모품 사용자준비
	음향반사판		1회	34,000	
	녹음	CD녹음	1회	34,000	· 소모품 사용자 준비
		기타	1회	5,000	· 회의장에 한함
	무선인터컴		1대당	5,000	
	야외공연장음향기기		1회	23,000	
무대조명	대 공연장		1시간	100,000	· 공연 준비·연습을 위하여 사용할 때에는 기준 사용료의 50%로 함 (30분 이상은 1시간으로 산정) · 전기사용료 포함
	소 공연장		1시간	80,000	
	야외공연장		1시간	80,000	
	드라이아이스기		1회	11,000	· 소모품 사용자 준비
	스모크기기		1회	23,000	
	팔로우스팟라이트	2kW\1회	17,000		
		1kW\1회	11,000		
	비디오프로젝트			1회	23,000
덧마루 설치			기본33㎡/1회	50,000	· 대중가수콘서트,연극, 뮤지컬,무용 등은 기본 사용료만 징수
			추가2㎡/1회	5,000	
후로링매트			1회	110,000	· 무용공연에 한함 · 소모품 사용자 준비

※ 주 : 1. 오전,오후,야간을 각 1회로 한다. 단, 1일은 09:00~22:00로 한다.

2. 부가가치세는 별도임.

3. 기타사용료

(단위 : 원)

구분 시설명		기 준	사 용 료	비 고
중계방송	비디오 촬영	1 회	30,000	· 회관의 음향소스와 회로를 사용할 경우
	TV · 인터넷 녹화 중계	1 회	40,000	
의상 및 대 · 소도구		1 회	취득가액의 5 %	· 전시실 파티션 포함
전시실 파티션		개 \ 1회	5,000	· 전시실의 1회는 1주일 대관으로 함

※ 주 : 1. 오전,오후,야간을 각 1회로 한다. 단, 1일은 09:00~22:00로 한다.

2. 부가가치세는 별도임.

(별첨1)

관계법령 발췌사항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제22조(조례) ■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육성)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4조(공유재산의 관리와 사무의 위임) 제22조(사용료) 제24조(사용료의 감면)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관련자료	“해당사항 없음”

관련 법령 발췌 사항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농림·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

가. ~ 카. (생략)

타. 중소기업의 육성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가. ~ 다. (생략)

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시·도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이하 "전문예술법인·단체"라 한다)를 지정하여 지원·육성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전문예술법인·단체를 지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설립한 공연장 또는 예술단의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2. 미술, 음악, 무용, 연극, 국악, 사진과 관련된 전시, 공연, 기획 및 작품 제작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3. 공연 또는 전시시설의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4. 문화예술 분야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비영리법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문화예술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③ 제1항에 따라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정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예술활동의 실적 저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3. 그 밖에 전시·공연 질서 문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 ⑤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 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예술법인·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전문예술법인·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 ①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이하 "전문예술법인·단체"라 한다)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 1부
2. 고유번호증 사본 1부(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7조에 따른 박물관 등록증 또는 미

술관 등록증이나 「공연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공연장등록증 사본 1부(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최근 2년간(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 기간을 말하며, 이하 제5호 및 제6호에서 같다)의 조직·인력 운영현황 자료 1부

5. 최근 2년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 각 1부

6. 최근 2년간의 공연·전시 실적이나 문화예술 사업 및 활동의 지원 실적 또는 공연·전시시설의 운영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사업자등록증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지정한다.

1. 조직·인력 운영의 적정성

2. 재정 운영의 건전성

3. 공연·전시 실적이나 문화예술 사업 및 활동의 지원 실적 또는 공연·전시시설의 운영 실적

4. 공연·전시된 작품의 예술적 완성도

5.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전문예술법인·단체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도지사가 전문예술법인·단체를 지정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4조(공유재산의 관리와 사무의 위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공유재산을 관리·처분하되,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공유재산을 관리·처분하게 할 수 있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하여 그 재산을 관리·처분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재산관리관"이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공유재산의 관리·처분 사무에 필요한 비용의 처리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2.4.>

제22조(사용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料率)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그 전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한꺼번에 내야 한다. 다만, 사용료 전액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 일정한 금액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2.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라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받아들이는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사용·수익

을 허가하는 경우

3.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을 하려는 자가 신축기간에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그 재산을 일정 기간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복구 완료기간의 사용료와 그 이자를 일할계산하여 감경할 수 있다.

(별첨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인상 사항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4. 작성자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관장 손 덕 인